
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

2025. 9.



행정안전부

적용 범위

- 본 지침은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하여 적용함
-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정함

종합 지침 목차

I. 지역사랑상품권 개요	1
II.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	4
III.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	8
IV.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관리	10
V. 참고자료	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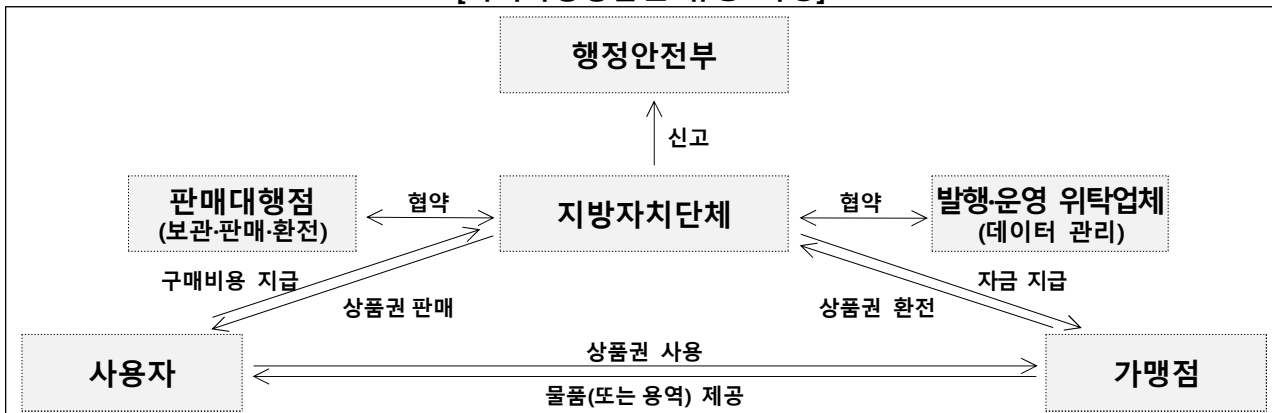
1. 개념

- (근거)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, 지방자치단체 조례
- (정의)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·판매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
 - ※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
- (목적)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
- (종류) 지류형 상품권, 카드형 상품권, 모바일 상품권
- (사용처) 발행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가맹점

2. 발행·유통 과정

- (신고) 지방자치단체는 상품권 발행·변경·폐지 시 행정안전부에 신고
- (발행·판매)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(또는 판매대행점)를 통해 상품권 구매
- (사용) 사용자는 가맹점에서 물품(또는 용역) 구매 시 상품권을 사용
- (환전) 가맹점은 사용된 상품권을 지방자치단체에 환전 요구

[지역사랑상품권 유통 과정]



3. 운영체계



4. 주체별 역할

□ 행정안전부

-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운영·개선 및 지침 수립·개선
 - 법령 및 지침 관련 질의 회신, 제도 관련 의견수렴 및 법령 개정
 - ※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하위법령, 본 지침에 해석이 필요한 경우 시·도의 의견을 들어 행정안전부에 신청(참고5)
- 지역사랑상품권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, 현장점검, 부정유통 등 관리·감독
- ‘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’ 등을 위해 이용 실태조사 등 행·재정적 지원

□ 광역자치단체

-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·제도 등 총괄 관리 및 지원
 - 시·군·구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배분기준 마련
 -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 현황 취합, 시·군·구 의견수렴
 - 부정유통 단속 역량강화교육 진행, 관할 시·군·구 부정유통 단속·조치 내역 점검 등 관할 시·군·구 부정유통 관리 총괄
 -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 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)에 예산 지원
- 예산 배분기준, 조정 내역, 발행현황, 자치단체 의견 등 행정안전부 제출

□ 상품권 발행 자치단체

- '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' 사업 적정 수행
- 발행 규모 결정, 발행·판매·환전, 상품권 폐기 등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
- 지역사랑상품권 발행·판매·환전 현황 관리 및 제출
- 지원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
- 가맹점 모집·등록, 휴·폐업 확인 등 지속 관리
 - 가맹점 등록 여부 결정, 등록 현황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공개
-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적정관리, 안전장치 마련
-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현장 수시 점검 및 관련 시스템 도입 등 노력
 -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상품권 발행형태 전환(지류형 축소, 後캐시백형 운영),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등 관리 시스템 도입·구축 등
- 자영업자·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
- 판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·이벤트 등 추진
- 지역사랑상품권 발행·운영 위탁 업체 선정 및 관리

< 발행·운영 위탁업체의 역할(법§18) >

- ▶ 적정 유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, 거래 모니터링 등 지속 관리
- ▶ 상품권 판매, 환전 과정에서 본인확인, 개인정보 관리·유출 방지
- ▶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등 부정유통 방지 시스템 도입·구축 등
- ▶ 가맹점 정보 공개 등 소비자 편의 제고

1. 발행 등

- (발행 및 관리 주체) 지방자치단체장(법 §4)
 - (발행)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발행(법 §4-①)
 - 발행신고서, 상품권 견본, 발행계획 등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(영 §2-①)
 - 상품권의 법적 성질 및 법정 통화와의 혼동 방지 위해 '화폐' 표현 지양, 주민 혼동을 막기 위해 운영대행사·플랫폼 명칭 사용 자제
 - ※ (예시) OO페이 상품권, OO은행 상품권 등
 - (관리)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아래 상품권 관리
 - 발행 규모, 할인율, 가맹점 등록·관리, 운영자금 관리,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현장 점검 등
- (발행신고) 발행·폐지·변경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에 신고(법 §5)
 - ※ 발행·폐지 및 변경하려는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
- (발행실적 제출)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발행 실적을 행정안전부에 제출(법 §14)
- (유효기간) 발행일로부터 5년(법 §4-②)
 -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음
- (유통지역) 관할 행정구역(법 §4-③)
 - 단, 필요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 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음

- (기재사항 및 방식) 기재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규정(법 §4④), 유효기간, 권면금액, 발행권자 등 필수적인 사항을 구매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표시
- (지류형) 명칭, 권면금액, 발행권자, 발행일, 일련번호, 유효기간, 환불 및 환급 기준 등을 구매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고 구매 시 안내
- (카드·모바일형) 관련 정보를 앱(App) 내 공지사항, 팝업 등을 활용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하기 쉽게 안내

2. 운영자금

- (관리주체)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관리(법 §4의2)
 - (계좌)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계좌 개설하여 그 계좌에 보관·관리
 - 불가피한 경우 행안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
 - (운영자금 관리) 관계 공무원에 의한 주기적인 계좌 확인(주1회 이상) 및 부정행위(계좌 유용·운영자금 도용 등) 방지를 위한 조치 등 실시
 - (이자 수입·낙전) 관련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귀속(세외수입), 차년도 상품권 발행 사업에 활용

3. 발행 및 운영 위탁

- (발행·운영 위탁업체) 지방자치단체는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**조례**로 위탁 가능(법 §18)
 - ※ 단, 상품권 운영자금은 직접 관리
- 위탁업체 지속 관리, 거래 시 발생하는 데이터 유출 주의
- 위임·위탁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라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(법 §19)
 - 개인의 동의를 받고 목적·이용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하며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·폐기를 철저히 하여야 함
- 위탁업체 변경 시 행정안전부에 변경된 업체 정보 등 자료 제출
- (판매대행점) 상품권 판매를 위해 판매대행점과 협약 체결(법 §6)
 - 판매대행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량, 재고량, 회수량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

4. 데이터 관리

- (지방자치단체) 전산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·보급에 적극 노력하고 정책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적극 활용
 - 운영 위탁 계약 시 원활한 자료 제공 가능하도록 관련 사항 명시
- (발행·운영 위탁업체) 결제 정보 등 자료 공유 요청 시 적극 협조, 보유 데이터에 대한 주기적 관리 필요
- (행정안전부) 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 및 데이터 종합 관리

5. 정보 공개

- (운영자금)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·관리 현황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, 행정안전부에 제출(법 §4의2-②)
 -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영자금의 현황 비공개 시, 비공개 사유 행정안전부에 제출
- (판매대행점) 판매대행점의 정보를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후 지체없이 조례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(법 §6-②)
- (가맹점)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(법 §7-④)
 - 가맹점 등록 취소 시, 지체없이 조례에 따라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(법 §8-③)

6. 기타

- (다른 정책 지급수단으로 활용)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타 현금성 지원 등을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 가능
 - ※ (예시) 농민수당·아동수당,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
 - 이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책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에 따름
- (발행 다양화)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가능
 - 지역 공공 배달앱·쇼핑몰 등 다른 정책과 연계하거나,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 활용
 - 공무원 복지포인트 중 일부, 시상금·포상금 등 상품권으로 지급 가능 단, 보수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제한(법 §13)
- (유의사항) 대가 없는 기부 행위 등에는 「공직선거법」 위반 유의
 - 상품권에 지자체장의 직명, 성명 등을 기재할 경우 법령 위반 소지

1. 가맹점

- (등록)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따라 등록하고 지속적 관리(법 §7-①)
- (등록 절차) 지방자치단체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(법 §7-③)
 - 다만,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
- (등록 거부)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조례에 따라 특정 업종이나 사업체 등록 거부 가능(법 §7-②)

<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>

- ▶ (원칙) '연 매출액 30억 원'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 제한
- ▶ (예외) 다만,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,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 등록 가능
 - ① 정책적 필요에 따른 현금성 지원 등을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*하는 경우
 - * (예시) 농민수당·아동수당,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 정책발행 상품권
 - ② 비영리·공익적 성격의 플랫폼사업장
 - 지역 농민·소상공인 판로 지원 및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농산물직거래사업장 : 공공형(지자체 직·간접적 운영), '면' 지역 민간형 로컬푸드직매장 등
 - ※ 매장 자체는 비영리 성격, 개별 농민·소상공인이 직접 수익을 취하는 경우여야 함
 -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생산·유통 및 판로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업장 :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생협 등
 - ③ 민간 농자재판매소가 없는 면 지역 내 농협 농자재판매장
 - ④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유형 분류상 마트·슈퍼·편의점 유형에 포함되는 가맹점이 없거나, 유사업종 가맹점이 있더라도 ㉠접근성이 매우 낮거나, ㉢판매품목·규모·업종형태 등 고려 시 종합소매업으로 보기 어려운 '면' 지역 내 농협 하나로마트
 - ※ 접근성 등 세부 판단 기준(예시)
 - ㉠ 접근성 : 유사업종 가맹점이 도서·산간 지역, 군 부대 내,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는 관광지 내에 있어 일상적 접근이 어렵거나, 원거리에 위치해 이용이 매우 불편한 경우 등
 - ㉢ 판매품목·규모·업종형태 등 : 유사업종 가맹점의 매장 규모가 소규모(33m² 이하 등)이거나, 생필품 또는 신선식품(육류·수산물·청과 등)을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, 업종형태가 종합소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, 간이과세자(연매출액 1억 400만 미만)인 경우 등
 - ※ '읍' 지역은 관내 '면' 지역보다도 사용처가 열악하여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

- (등록 취소) 법률 위반 가맹점에 대해 등록 취소 가능(법 §8)
 - (취소 사유)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, ②조례에서 정한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, ③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 - ※ 단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해야 함
 - (재등록 제한)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 재등록 제한 가능

2. 환전

- (환전 대상) 가맹점만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 가능(법 §9)
 -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상품권의 환전 대행
- (환전 한도) 지방자치단체장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가맹점 매출액 등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환전 한도 설정 및 관리

3. 구매한도 및 보유한도

- (구매한도) 1인당 月 구매한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
 - ※ 필요시 월간 구매한도와 연간 구매한도 결합 운영 가능(예시 月50만&年300만)
 - ※ 다만,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1인당 月 구매한도는 70만원으로 제한
- (보유한도) 1인당 月 구매한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

4. 할인율

-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할인율 설정(법 §15-②)
 -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해 10%를 초과하는 할인율은 지양
 - 다만, 범국가적 소비 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*에서 예외적인 경우 10%를 초과하는 할인율 적용 가능
 - * (예시) 명절 및 지역 축제·행사 기간, 국비 교부시 별도의 조건을 정한 경우 등
- 구매한 상품권의 장기 보유를 방지하고,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10%를 초과하는 할인율 적용 시 추가 할인율은 後캐시백 형태로 운영

1. 부정유통 관리

- 지방자치단체장은 상품권 발행형태 전환 등 부정유통 관리에 노력
 - (유통관리) 건전유통을 위한 발행형태 전환 및 관련 시스템 구축·도입
 - 지류형 상품권의 발행을 축소·폐지하고, 後캐시백형 상품권을 운영하는 등 구조적으로 부정유통이 어려운 형태의 상품권 발행
 - 상품권 구매·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, '이상거래 탐지시스템'을 활용하여 부정유통 관리에 노력
 - (자정노력) 지역별 상인회 등과 협조, 가맹점 대상 교육 및 계도 지속

2. 부정유통 단속

- 지방자치단체장은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 근절
 - ① 반기별 전국 지자체 일제단속
 - (단속방식) 지방자치단체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 위반 유형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, '이상거래 탐지시스템'을 적극 활용
 - (투입인력) 지방자치단체별 인구분포·발행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인력 투입, 특히 특·광역시외의 경우 자치구 인력을 포함하여 단속반 편성
 - (교육)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기초 담당자 대상 부정유통 단속 역량강화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, '이상거래시스템 활용법' 및 '부정유통 단속 유형' 등을 숙지
 - (현장관리) 광역자치단체가 '기초단체 단속·조치내역' 점검 및 현황관리를 실시하여 현장관리 철저

② 수시단속

-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 현장 점검 및 의심 가맹점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실시
-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접수된 내용에 대한 수시 단속 실시

3. 처분

□ 단속 결과에 따른 적절한 처분 실시

- 단속 결과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행·재정적 처분 실시
⇒ 부정유통에 대한 경각심 제고, 부정유통 근절
-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맹점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
※ 고의성, 반복성, 유통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안이 심각한 경우 수사의뢰

참고 1

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

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------	------	------

지방자치단체명	지역사랑상품권 명칭:	
	소관부서:	담당자:
	전화번호:	전자우편주소:

신청 내용

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별 · 금액별		발행예정 신청액	
종류	권면금액별	매수	금액(천원)
지류형			
소계	-	-	
카드형	-	-	
모바일	-	-	
총계	-	-	
직전사업연도 판매액(A)	해당사업연도 발행 예정금액 총계(B)		(B/A) 비율(%)
직전사업연도 발행예정금액(A)	직전사업연도 발행 예정금액 중 미발행액(B)		(B/A) 비율(%)

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역 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

행정안전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지역사랑상품권 건본 2.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 및 직전 반기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참고 2**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변경 신고서****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변경 신고서**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지방자치단체명	지역사랑상품권 명칭:	
	소관부서:	담당자:
	전화번호:	전자우편주소:

신 고 내 용

변경 사항	변경 전	변경 후	변경 사유 및 변경(예정)일

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신고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자치단체의 **장 직인**

행정안전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지역사랑상품권 견본(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변경 계획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참고 3**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****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**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지방자치단체명	지역사랑상품권 명칭:	
	소관부서:	담당자:
	전화번호:	전자우편주소:
발행폐지 연월일	년	월 일
상품권 사용기한	년	월 일
상품권 환불기한	년	월 일
발행폐지 사유		
상품권 환불기한 경과 후 소비자 보호방안 (필요시 별지 제출 가능)		

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폐지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자치단체의 **장** 직인

행정안전부장관 귀하

참고 5

지역사랑상품권 관계 법령질의 신청서식

지역사랑상품권 관계 법령질의 신청서

① 신청 개요	기관		부서명		담당자 (연락처)	
	질의 요지					
	쟁점					
	적용 범위	<input type="checkbox"/> 전국 지방자치단체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부 지방자치단체 <input type="checkbox"/> 단일 지방자치단체				
② 질의 요지	사실 관계					
	질의 사항					
	실무 현황					
③ 관계법령						
④ 관련 판례, 해석례						
⑤ 대립 의견	갑설					
	을설					
	기관 의견					

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 대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질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행정안전부장관 귀하

참고 6**지역사랑상품권 자금 관리 현황 공개 서식****1. 관리방법**

관리 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금고	<input type="checkbox"/> 신탁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
금고명 (신탁사명)			

2. 운용자금 잔액

사용자 충전금 (선납금)	백만 원
할인지원금 (인센티브)	백만 원
정책수당	백만 원
기타	백만 원
소개	백만 원

3. 공개

최근 공개일자	
공개 방법	

참고 7

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정사무 이행 체크리스트

지자체 명	담당 부서	점검일

점검 지표	점검사항	점검결과	
		예	아니오
① 자금 관리	○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·관리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가?		
	○ 미공개하는 경우, 미공개 사유 및 향후 공개 계획 기재 ▷		
② 판매대행점	○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 공개에 대해 조례로 정하고 있는가?		
	○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 공개하고 있는가? ○ 미공개하는 경우, 미공개 사유 및 향후 공개 계획 기재 ▷		
③ 가맹점 등록	○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가?		
	○ 공개하고 있는 경우, 구체적인 공개 방법 기재 ▷ ○ 미공개하는 경우, 미공개 사유 및 향후 공개 계획 기재 ▷		
④ 가맹점 등록취소	○ 가맹점 등록 취소에 관한 정보 공개에 대해 조례로 정하고 있는가?		
	○ 가맹점 등록 취소에 관한 정보 공개하고 있는가? ○ 미공개하는 경우, 미공개 사유 및 향후 공개 계획 기재 ▷		